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391-4 / 전송 731-6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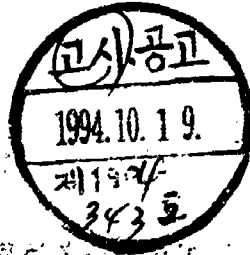
문서번호 주계 58533 - 2062

시행일자 1994.10.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양 10. /	
주책국장	전결			
주책계량과장	계량 2 계장		법무담당관 심사관 (고시안심사)	
기안	박 문 회		협조	

제목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808호(89.12.30)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94-2호(94.1.10)로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된 우리시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관할 마포구청장이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및 지구내외에 걸쳐있는 건물의 부분 철거가 곤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을 요청하여 내용검토한바,

3.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안 1부.

2.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도면 1부.

3.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조서 1부. 끝.

(제 2 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재 의뢰

1.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다. 법적근거 : 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6조제5항 및 제12조제1호.
첨부 1. 고시문 사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마포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통보

1. 주택 58533 - 3242호(94.10.12)와 관련임.

원본대조 

2. 위호와 관련 귀구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요청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 하였고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관련부서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추진하기 바라며

3.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빈번히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도면 1부.

3.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도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신 도시개발공사 사장

참조 재개발부장

제목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통보

1. 귀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하였고 통보하니 적극 사업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구 내 해당주민에게 적절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도면 1부.

3.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도서 1부. 끝.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통보**


1. 우리시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사본 1부.

2.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도면1부.

3.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수립 조서 1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원본대조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고 시 (안)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심사	1994. 12. 23	제 94 - 2 호
발령자	도시개발공사	주무관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1. 건설부고시 제808호(89.12.30.)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94 - 2호(94. 1.10)로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된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변경수립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와 마포구 주택과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4년 12월 일

원본대조

서울특별시장

1. 지구의 명칭 :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
2.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27 -1 번지일대
3. 면 적 : 기정 : 21,051.5㎡ 변경 : 21,034㎡ (감 17.5㎡)
4. 사업시행기간

당초	: '91. 1. 1. ~ '94. 12. 31
변경	: '91. 1. 1. ~ '95. 12. 31
5.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6.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내용

가. 기존건축물의 동수

단위 : 동

기 정			변 경			비 고
계	유허가	무허가	계	유허가	무허가	
449	272	177	448	271	177	감 1동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택 지	21,051.5	21,034	감 17.5	지구제외 : 감 23 면적정정 : 증 5.5

다. 주택건설 계획 : 변경없음

라. 사업비추정 : 변경없음

학. 변경사유 { 부분철거 불가능한 건물외 토지(41-321)를 지구에서 제외(감 23㎡)
선형유지를 위하여 편입한 도로의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정정(증 5.5㎡)

의 표대 조 